

## 뇌전증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세부유형 : 뇌전증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발작의 자세한 증상 및 발생빈도에 대한 진단소견 기재
2. 소견서	- 뇌전증장애 소견서(규정서식 사용)
3. 진료기록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: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2년간(소아인 경우 질환에 따라 1년)의 기록(진단명, 발작의 종류, 발생빈도,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)이 포함되어야 함</li> <li>- 투약기록지 : 최근 2년간(소아인 경우 질환에 따라 1년)의 투약기록으로 약물명, 용량, 투약횟수가 포함되어야 함</li> <li>※ 1년간 기록지 가능 질환 : 영아연축, 레녹스-가스토 증후군 등의 뇌전증성 뇌병증</li> <li>※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</li> <li>- 뇌파검사결과지 : 이미 시행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</li> </ul>
<p>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</p>	
<p><b>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</b></p>	
<p>-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, 신경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</p>	
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**\* 성인**

-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는 사람

**\* 소아청소년(만 18세 미만)**

발작 형태	발작 횟수
전신발작	1개월에 1~3회
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(head drop, falling attack)	6개월에 1~5회
뇌전증성 뇌병증 (epileptic encephalopathy)	
근간대성발작(myoclonic seizure)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	1개월에 1~9회
부분발작	